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·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3)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4)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함(안 제5조~안 제7조)
- 5) 위기가구 발굴 홍보,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민간협력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위기가구” 를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,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규정함.
-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구청장이 민간인력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등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·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인적안전망으로써,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으로 규정함.

나)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사항을 규정함
 - 실직,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
 - 질병,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 - 가구 구성원의 자살,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 - 그 밖에 건강문제,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
다)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함(안 제5조 ~ 안 제7조)

-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·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.

3) 검토 의견

-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을 위한 기초 안전망 체계를 강화하는 법령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

적 위기 등 갑작스러운 생활환경변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, 제13조(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), 제14조(민관협력) 규정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고 보상책 마련으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포상금 지급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이 새로운 방안으로 도입되므로 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 등 주민 홍보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이 실효성 있도록 해당 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